

의안번호	2204109
의 퇴 인	임광현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계번호	24E3916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2026년 37억원 등 5년간 174억원(연평균 35억원)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의4)	-37	-36	-35	-34	-32	-174	-3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4제3항 (특별세액공제)	○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기관 확대 - (현행)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·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·대학교,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출한 교육비 - (개정안)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·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·대학교, 평생교육시설 및 <u>대안교육기관</u> 등에 지출한 교육비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59조의4제3항(특별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고, 추계기간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으로 설정
 -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되며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실시되는 2026년부터 세수효과가 발생(징수기준)
- 미인가 대안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한 개인에 대한 실적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추계에서는 교육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
 - 개인별 소득분포가 부재하므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함
-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확대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

-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%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
 -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,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, 수업료, 학원수강료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
 -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특수교육비에는 공제한도가 없으나, 초·중·고생 이하는 연 300만원, 대학생은 연 900만원의 공제한도 적용
- 2022년 귀속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57.5만명, 공제세액 8,35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용인원은 증가하고(0.2%) 공제세액은 감소(△5.4%)

[표 4]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(귀속년도 기준)

(단위: 천명,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연평균
적용인원	2,627	2,747	2,203	2,241	2,575	2,490
(증가율)	(3.2)	(4.5)	(△19.8)	(1.7)	(14.9)	(0.2)
공제세액	10,975	10,704	8,194	8,345	8,350	9,598
(증가율)	(△0.4)	(△2.5)	(△23.4)	(1.8)	(0.1)	(△5.4)

주: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

자료: 각연도 「국세통계연보」(국세청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(추계대상)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세수효과로 설정
- (추계방법) 2019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, 향후 세수효과는 만 7~18세(초중등학교 취학연령) 인구 증감률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정 후 5년간(징수기준 2026~2030년) 세수효과 추계
- (2019년 기준 세수효과)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소득세는 2019년 귀속 기준 40.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(세액공제 신청자수)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신청 근로소득자 인원수는 8,904명으로 추산
 - 2019년 기준 미인가 대안학교 273개교의 평균 학생수가 52명으로 조사되어, 총 학생수는 14,196명으로 추산

[표 5] 교육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수 분포: 2019년 기준

(단위: 개)

학교수	학생수						평균
	1명~10명	10명~50명	50명~100명	100명~150명	150명 이상	무응답	
273	36	145	55	14	21	2	52명

자료: 「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」(교육부 합동, 2019년),

「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·정책적 개선과제」(국회입법조사처, 2021.6.) 재인용

-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고 초중등자녀 학부모의 일반적 연령 분포를 감안, 근로소득자 비율(79.9%)¹⁾ 및 만30~60세 근로소득 비면세자

비율(78.5%)²⁾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, 2019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신청 근로 소득자 인원수는 8,904명으로 추산

- (세액공제 대상금액) 2019년 기준 평균 학생부담금 732.8만원은 자녀 1인당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액(300만원)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, 학부모 모두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최대한도(45만원=300만원×15%)를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
- 2019년 설문조사 자료³⁾에 따른 대안학교 평균 학생부담금 732.8만원(예탁금 및 발전기금 제외한 입학금, 수업료, 기숙사비 및 급식비 등) 적용⁴⁾

[표 6] 교육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부담금 분포: 2019년 기준

(단위: 개)

학교수	연간 학생부담금							
	0원	1만원~100만원	100만원~500만원	500만원~1000만원	1000만원~1500만원	1500만원 이상	미기재	평균
273	38	8	17	46	14	6	144	732.8만원

자료: 「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」(교육부 합동, 2019년), 「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·정책적 개선과제」(국회입법조사처, 2021.6.) 재인용

- 2019년 기준 세수효과는 1인당 세액공제액(45만원)에 공제대상 인원수(8,904명)를 곱한 40.1억원

[표 7]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: 2019년 기준

(단위: 명, 만원)

공제대상 인원	1인당 공제대상 금액	세액 공제율	1인당 세액공제액	전체 세수효과
(가)	(나)	(다)	(라=나×다)	(마=가×라)
8,904	300	15%	45	400,677

- 1) 2019년 귀속연도 기준 과세대상근로소득자 1,907만명 및 종합소득세신고자 722만명에서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(중복자) 245만명을 제외한 총 근로·사업소득자수는 2,385만명이며, 총 근로·사업소득자 중 근로소득자 비율(1,907/2,385)은 79.9%임.
- 2)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연령(만8~19세) 및 일반 출산연령을 고려,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 부모 연령은 만 30~60세 사이에 대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. 2019년 귀속연도 기준 만30~60세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21.5%
- 3) 교육부 등, 『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』, 2019
- 4) 동 설문조사에 절반 이상(273 중 144개교) 학교가 무응답하여 교육비 관련 자료로서 정확성에 한계가 있지만, 전수조사 자료가 부재하므로 해당 자료를 추계에 활용함.

- 이후 추계기간 동안 2019년 기준 세수효과 추계액이 향후 만7~18세 인구 증감률(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)⁵⁾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26~2030년(징수기준) 세수효과 추계
 - 자료의 부재로 반영하지 못한 교육비 공제한도까지 감안할 경우, 추계금액은 동 금액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음

(3)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 - 2026년 37억원 등 5년간 174억원(연평균 35억원)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(안 제59조의4)	-37	-36	-35	-34	-32	-174	-35

5) 중위값: ('26) -2.6%, ('27) -3.7%, ('28) -3.6%, ('29) -3.9%, ('30) -5.1%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